

창업대체학점 인정제(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)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서울캠퍼스의 창업대체학점 인정제(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)의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‘창업대체학점 인정제’는 창업 준비활동(창업실습) 또는 창업(창업현장실습)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, 평가를 통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.

② ‘창업실습’은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한 창업동아리(이하 ‘창업동아리’)에서 행하는 창업 준비활동을, ‘창업현장실습’은 실제 창업 후 행하는 창업 활동을 말한다.(2020.9.22. 개정)

제3조(강좌 개설) ①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은 정규학기에 개설한다.

② 과목명은 ‘창업실습’, ‘창업현장실습’으로 표기하며, 성적표시는 P 또는 F로 한다.

제4조(신청) ①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 신청 가능하며, 창업실습은 창업동아리에 속한 경우, 창업현장실습은 사업자등록증 상 (공동)대표가 실제 창업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고, 인정불가 업종 및 신청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은 창업교육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(2020.9.22. 개정)

② 신청서 및 제반 서류는 소정기간 내에 학부(과)장의 승인을 얻어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(2020.9.22. 개정)

③ 수강신청 학점은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5조(학점 및 근무시간) ① 재학 기간 중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1조 현장실습,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을 합산하여,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(2019.4.30. 개정)

② 창업실습은 6학점, 창업현장실습은 18학점을 재학 기간 중 최대 인정학점으로 하고, 동일학기 내에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1조 현장실습, 창업실습, 창업현장실습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.

③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1조 현장실습,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은 전공과 자유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하며, 학부(과)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복수전공을 포함하여 전공학점(전문교육과정)으로 인정할 수 있다.(2019.4.30. 개정)

④ 창업실습의 최소 근무시간은 15주 160시간을 3학점으로,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, 창업현장실습은 최소 근무시간 12주 480시간이며, 4주 160시간을 3학점의 기준으로 한다.

제6조(평가)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은 실습생이 제출한 보고서, 평가표 등에 대해 창업교육센터 및 각 학부(과)장의 평가를 거쳐 학점을 부여한다.(2020.9.22., 2023.6.23. 개정)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에 관한 내용은 학칙 및 관계기관 운영지침을 따르고, 그 외의 세부사항은 창업교육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(2020.9.22. 개정)

부 칙(2019.01.02. 제정)

이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4.30. 개정)

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9.22. 개정)

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6.23. 개정)

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